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5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상향입법 및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김영환의원안)	3

I. 개요

1.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5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환의원 등 25인
- (2) 제 안 일 : 2024. 10. 17.
- (3) 회 부 일 : 2024. 10. 18.

나. 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음.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를 받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도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데 대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

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104조의8 제목).

나.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표 및 세액신고를 전자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만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1항).

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1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 변경, 공제금액 상향입법 및 영세납세자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김영환의원안)

현행	정부안	김영환의원안	진성준의원안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8) ○ 세액공제 대상 신고 및 공제액 -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건당 1만원 ○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연간 300만원 - 세무·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 세액공제 대상 축소 - 양도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삭제) ○ 공제한도 하향 - 세무대리인: 연간 200만원 - 세무·회계법인: 연간 500만원	☐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신고 및 공제액 -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2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 1만원(간이과세자: 1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현행과 같음)	☐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신고 및 공제액 -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2만원(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납세자: 3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간이과세자: 2만원) ○

* 정부안 2024. 9. 2. 제출(의안번호 3522), 김영환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58)
진성준의원안 2024. 10. 29. 발의(의안번호 4985)

□ 3건의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안은 전자신고 정착이라는 도입목적이 달성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세무대리인과 세무·회계법인이 동 공제제도를 통해 연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축소하려는 것이고,

반면, 김영환의원안과 진성준의원안은 동 제도를 유지하되, 그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공제금액은 현행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세기본법」¹⁾에 따른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1999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0년부터 전자신고 제도가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금액(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양도소득세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도 도입하였음.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주요 변화]

적용연도	주요 변화 내용
2004	○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설 - 공제액: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 공제대상 세무대리인: 세무사·세무법인 - 공제액: 납세자 1인당 1만원(공제한도 연 100만원)
2005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확대: 세무법인의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인상
2006	○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회계법인 추가: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2008	○ 세무대리인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납세자 1인당 2만원(공제한도-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500만원)
2009	○ 세무대리인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납세자 1인당 4만원(공제한도-세무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800만원)
2010	○ 세무대리인 공제방식 변경: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으로 변경
2012	○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공인회계사 추가: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액 상향: 세무사·공인회계사 연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1,000만원
2019	○ 세무대리인 공제한도액 축소: 세무사·공인회계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750만원
2021	○ 공제대상 세목에 양도소득세 추가

2004년 동 제도 시행 이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조세지출의 규모도 전자신고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2022년 전자신고율은 소득세 99.5%, 법인세 99.6%, 부가가치세 97.1%이며, 2023년 기준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체 조세지출액은 1,75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전자신고비율]

(단위: %)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득세	92.5	91.0	95.2	96.5	97.3	98.5	98.5	99.3	99.5
법인세	98.0	98.6	98.8	99.0	99.2	99.3	99.4	99.6	99.6
부가가치세	87.2	90.0	91.6	92.8	94.2	95.3	94.9	96.1	97.1

자료: 기획재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소득세	611	617	684	766	827	829	847	1,105	1,282
법인세	20	23	25	30	30	27	27	28	29
부가세	327	322	351	376	401	393	399	411	446
합계	958	962	1,060	1,172	1,258	1,250	1,273	1,544	1,757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정부안과 김영환·진성준의원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정반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안의 논거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전자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자신고 활성화라는 당초 입법목적이 달성된 세목은 더 이상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임.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 도입 전 2003년에는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율은 각각 43.5%, 92.7%, 33.8%였는데,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율은 97% 상회하고 있음.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 도입 전·후 전자신고비율]

(단위: %)

구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03년	43.5	92.7	33.8
2022년	99.5	99.6	97.1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납세자 입장에서도 홈택스(인터넷), 손택스(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여,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202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²⁾에서 실시한 설문조사²⁾에 따르면, 전자신고를 선택한 이유로 ‘서면신고에 비해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36.4%),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따름’(27.4%)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은 6.7%에 불과함. 또한, 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88.1%가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함.

2)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2024년 7월 10일 ~ 2024년 7월 18일에 503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셋째,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비용은 수익 창출을 위한 대응원가의 성격이므로 국가가 보전해 줄 당위성이 낮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³⁾.

□ 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김영환의원안, 진성준의원안의 논거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전가된 전자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임.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중에 하나를 임의적으로 선택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전자신고율이 상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면신고 시 과세관청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신고서류 입력 및 오류검증 등을 세무대리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대신할 수 있도록,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기존 연구⁵⁾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290만원 수준인데, 전자신고에 따른 편익은 1,299만원 수준으로서 전자신고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1,990만원의 납세

3) 기획재정부 의견임

4)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5) 한국국제조세협회,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지원 축소정책에 대한 대응 및 세정협력비용에 대한 납세자(세무사) 지원확대방안 연구’, 한국세무사회 연구용역보고서, 2018. 11. 14

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공제제도의 명칭 또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임.

둘째, 세액공제 축소에 따라 전자신고가 줄어드는 경우 서면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국세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자신고의 지속적인 활성화는 국세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임.

서면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류를 직접 전산망에 입력하여 전자화하고 오류 검증 등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세무공무원 충원 등을 통한 국세행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셋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는 경우 추가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계층이 디지털 취약계층과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전자신고의 편의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취약계층,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전자신고 이용에 한계가 있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동안 과세당국이 세액공제로 비용을 보전해주었기 때문에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세금 신고를 대행시킬 수 있었던 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음.

□ 한편, 공제금액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김영환의원안, 진성준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제금액은 납세자가 최종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임에도, 현행법⁶⁾은 공제금액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추후 공제금액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끝으로, 영세한 사업자 등에 대해 우대하여 공제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김영환의원안, 진성준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물가상승, 경기불황에 보다 취약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공제금액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재분배기능 강화 측면과, 동 세액공제 제도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면세점 이상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보다 영세한 사람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재분배적 성격의 지원은 누진과세 체계 조정 혹은 복지정책과 연계한 재정지출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161